

##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 후속보고서

1.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이행에 관한 제4차 정기보고서에 대해 2015년 10월 22일·23일 양일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이하 ‘위원회’)와 건설적 대화를 가졌다. 위원회는 심의 후 12월 3일 위원회의 우려와 권고를 담은 최종견해(CCPR/C/KOR/CO/4)를 공식 발표하였다.
2. 위원회는 최종견해 제59항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위원회의 절차규정 제71(5)항에 따라 최종견해 제15항(성적 지향·성정체성에 근거한 차별), 제45항(양심적 병역거부), 제53항(평화적 집회)의 권고 이행에 관한 정보를 1년 내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1년간 이루어진 상황과 상기 권고에 관한 정부의 의견을 제시하는 이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 권고 제15항 이행에 관한 정보

#### *LGBTI보호를 위한 법체계*

3. 대한민국은 헌법 제11조에 평등권 규정을 두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차별금지사유로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을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동성애·양성애·성전환자 등은 동법 상 규정된 구제절차에 따라 차별행위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들 개개인에 대한 폭력이나 모욕 등의 행위가 형법에 규정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별도의 법제를 두고 있지는 않다.

#### *군형법 제92조의6*

4. 「군형법」 제92조의6과 관련하여, 2016년 7월 28일 헌법재판소는 구 군형법 제92조의5(현재의 제92조의6에 해당하는 조문)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에서 “해당 조문은 ‘군이 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 법익으로 하여 이를 침해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가사 결과적으로 동성 군인이 이성 군인에 비하여 차별적 취급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군의 특수성과 전투력 보존을 위한 제한으로서 차별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며 위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5. 「균형법」 제92조의6는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같이 동성애자 처벌을 위한 조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부는 현재 이에 대한 개정이나 폐지계획을 수립한 바 없다. 2015년 심의 당시 위 규정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균형법개정안이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되었으나 2016. 5. 30. 제19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현재 국회에는 이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지 않다. 한편 정부는 부대관리훈령 등을 통해 군대 내에서 동성애자임을 이유로 하여 차별적인 조치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 성교육

6. 정부는 공청회 실시, 교육청·학교·관련단체·전문가 의견수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2015년 2월 학생발달특성에 맞는 유·초·중등학교 성교육표준안 및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교육내용을 수정·보완하고, 전문가들에 의한 연구를 계속해 왔다.
7.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내에는 성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한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에 성적지향 등 다양한 형태의 성정체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 교육하는 것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이나 우려를 표명하는 사회각계의 의견이 많다.
8. 사회문화적으로 합의된 가치를 중심으로 공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교육의 기본 정신에 따라, 정부는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에 관한 내용을 초·중등학교 성교육에는 포함하지 않고 있으나 동성애를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사항은 관련 과목인 사회과, 도덕과 등에서 상세히 지도하고 있다.

### 성전환 접근성

9. 우리나라의 성전환 인정여부는 법원의 결정 사항으로, 2006년 대법원 판례에 따른 법원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 등 사무처리지침’에는 ① 성전환 수술을 받고, ② 반대 성으로서의 외부성기를 비롯한 신체를 갖출 것, ③ 미성년자녀가 없을 것, ④ 혼인 중이 아닌 성전환자일 것 등을 성별정정 허가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관련 사무 지침은, 판사들이 판결을 함에 있어 참고하는 자료로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성별정정 허가여부는 담당 판사가 개개의 사례별로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한다.<sup>1)</sup> 법원은 사회통념상

1) 2013년에는 성전환수술 없이도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허가한 사례도 있다.

일반적인 사람의 성에 대한 평가 기준이 변경되는 등 성전환의 인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논의가 있을 시에 관련 기준을 검토할 계획이다.

### 권고 제45항 이행에 관한 정보

10. 정부는 한반도의 안보상황에 긍정적인 변화와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어야 입영 및 집총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다. 한편 헌법재판소에는 대체복무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헌법소원이 계류 중이다.
11. 현재 신념에 의한 입영 및 집총거부로 인하여 수감 중인 사람들은, 우리 법원에서 공정한 심리를 거쳐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사람들로서, 이들을 즉시 석방하는 것은 한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와 원활한 기능을 저해하게 되므로 검토할 수 없다. 이들에 대한 석방, 범죄기록 삭제, 적절한 보상에 관한 정부 의견은 이미 관련 개인진정결정(CCPR/C/112/D/2179/2012)의 이행에 관한 정부 답변서에서 밝힌 바와 같다.
12.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병역기피자 신상공개제도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동년 12월까지 확인된 병역기피자 600명에 대하여는 규정된 절차대로 각 지방병무청에서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547명이 잠정 공개대상자로 선정되었다.<sup>2)</sup>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입영거부로 주장하는 사유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들 또한 병역기피자로서 신상공개제도의 대상이 된다. 대상자들에 대하여는 공개예정임을 통보하였고 2016년 11월까지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였다. 정부는 향후 이들의 소명 내용을 검토하고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 권고 제53항 이행에 관한 정보

13. 정부는 헌법 및 국제인권법에 따라 평화적 집회에 관한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집회시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경찰에 신고만 하면 집회시위를 개최할 수 있고, 평화적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는 처벌 대상이 된다. 현행 집시법은

2) 잠정 공개대상자는 현역입영기피가 427명, 사회복무 소집기피 82명, 국외불법체류 27명, 징병검사 기피 11명 등이다.

일반적 금지규정을 둔 것이 아니라 금지사유를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신고제가 실질적 허가제로 운용되지 않도록 하였다.

14. 정부는 집시법상 금지통고 사유를 엄격히 해석하고 있고, 실제로도 2015년 경찰에 접수된 집회신고 12만 7천여 건 중 금지통고한 것은 193건으로 0.15%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일몰~일출까지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야간집회 부분은 2009년 9월 헌법불합치, 야간시위 부분은 2014년 3월 한정위헌 결정을 하여 각 결정일 이후부터는 집회는 24시간 전면 허용되고 있고, 시위는 자정 이후 금지된다. 집회로 신고하고 자정 이후 시위로 변질되는 경우에는 강제해산도 가능하나 대부분은 강제해산을 하지 않고 위법 행위자에 대하여 사후 사법처리를 하고 있을 뿐이다. 정부는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고,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국민들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야간 집회나 시위를 일정 시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 결정 관련 후속 입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15. 강제력 사용과 관련해서도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대통령령인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사용장구·장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법령과 관례에 따라 필요최소한도의 강제력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차벽과 살수차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현저하게 침해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운용하고 있다. 차벽설치 시에는 일반시민의 통행로를 확보한 다음 순차적으로 차벽을 설치하고 위험상태가 해소되면 즉시 차벽을 철거하는 등 차벽설치를 최소화하고 있고, 살수차 또한 관례상으로 허용되는 필요성, 급박성, 비례성 등의 요건을 준수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각급 경찰관서에서는 수시로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집회시위 현장에서 강제력 사용과 관련된 인권·안전교육을 반복하여 실시하고 있다.
16. 정부는 그 어느 누구도 시위를 주최하거나 참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형법을 적용하여 수사하거나 체포하지 않으며, 장시간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관련 법률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

17. 한편 정부는 과거 집시법 규정<sup>3)</sup>을 악용하여 신고만 하고 실제 집회를 개최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람의 집회 또는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례를 막기 위하여 2016년 1월 집시법을 개정하였다.
18. 개정된 집시법은 신고된 집회시위를 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집회일시 24시간 전에 철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집회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시간·장소를 분할하여 집회를 개최하도록 권유하는 등 집회 또는 시위가 서로 방해되지 아니하고 평화적으로 개최·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여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였다.

---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법률 제8733호, 2016년 1월 27일 법률 제13834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제8조 ②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제1항에 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